포 항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제738호 2009. 7. 21(화)

선람	기 관 의 장

포 항 시

○시장지시사항 …… 2

◀ 조 례 ▶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47호) …… 6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48호) ……11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제949호) …… 13

◀ 입법예고 ▶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09-830호) …… 18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09-831호) …… 47

회람								

발행 : 포항시 편집 : 공보담당관(☎270-2234) 190×268 신문용지 70g/m2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09. 7. 20(월) 간부회의 -

포 항 시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7. 20)	○ **시장 부재중 차질없는 시정추진에 감사** - 전체 직원들이 불빛축제 등 각종 행사와 업무추진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으며, - 일본 출장중(2박3일)에 차질없는 시정을 추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림.	전 부 서
	○ **각종 행사추진을 내일같이 생각하고 역할에 충실** - 국제불빛축제, 시승격 60주년행사 등 각종 행사에 안전사고, 불법주차, 불친절 등에 꾸준한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 각 부서에서는 모두가 내일이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하나하나 챙겨주기 바람.	전 부 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 **휴가철 지역방문객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 - 장마철이라 해수욕장, 죽도시장 등 활발하지는 않으나 휴가를 맞아 외지 방문객이 많아지고 있음. - 공중화장실 등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계곡 등 비지정 유원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전 부 서 (경제통상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남,북구청)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7. 20)	○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피해발생 대비철저** - 중부와 남부지역에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 - 공사현장, 산사태 위험지역, 저지대 등 위험지역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 해주기 바람.	전 부 서 (재난안전과) (건 설 과) (남,북구청)
	○ **집단민원 관리철저** - 해도 조형물 하도급, 제철동 쓰레기소각장, 시청인근 예식장 건립, 양덕동 삼성 쉐르빌 주변 일조권 등 각종 민원을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 특히, 양덕동새마을금고 분소설치에 대해서는 경상 북도 연합회에서 민원발생 사항으로 사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전 부 서 (건 설 과) (청 소 과) (건 축 과) (새마을봉사과)
	○ **전직원 하계휴가 실시** - 전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실시하여 충분한 휴식으로 재충전 할 수 있도록 하고, - 간부들이 먼저 실천하여 휴가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람.	전 부 서 (자치행정과)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7. 20)	○ **죽도시장 일본인 손님맞이 일본어 교육추진** - 많은 일본인이 포항을 방문하며 죽도시장을 찾고 있으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상인들의 일본어 교육을 지속 추진하기 바라며, - 공무원들도 일본연수를 실시하며 대화가 가능하도록 일본어 회화 교육을 추진하기 바람.	전 부 서 (자치행정과) (경제통상과) (일본T/F팀)
'09-096	○ **송도 "평화의 여신상" 보존** - 송도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평화의 여신상"은 포항에서 최초 설치된 의미있는 조형물임. - 현 위치 인근에 이전 설치하여 보존토록 하고 향후 관리를 잘하기 바람.	건 설 과
'09-097	○ **시설물 존재에 대한 표지석 설치** - 시청주변 시가지는 대잠저수지를 매립하여 조성한 지역으로 저수지 존재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표지석을 설치하기 바라며, - 구 흥해읍사무소가 있었던 현 흥해읍복지회관에도 읍사무소 존재사실을 기록한 표석을 설치하기 바람.	재정관리과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098	○ **일본에 포항알리기 적극 추진** - 일본에 포항알리기 먹거리 공략으로 가자미 밥식혜 등 포항의 특색있는 음식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 일본 큐슈, 나고야 중부, 홋카이도, 기존 활동지역 등에 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일본T/F팀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7월 21일

포항시 조례 제 947 호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 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

3. “특례보증” 이라 함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 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 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 이라 함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의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기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의하여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의한다.

③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5개 이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

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8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	총포 도매업
46779중	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1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	기관 구내 식당업
56132	이동 음식업
5621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 중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	도박 관련 운영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1. 제정이유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안 제3조)

나.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2년 이내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이차보전 지원(안 제5조)

다.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7월 21일

포항시 조례 제 948 호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시설에” 를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소득주민이 사용하는 공동전기에 대한 요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일부 공동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전기요금” 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 등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함 중에서 기타시설 중에 중앙집중식 난방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7월 21일

포항시 조례 제 949 호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를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의2의”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2제1항의”를 “영 제15조제3항의”으로 하며, 제2항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의”를 “영 제15조제2항의”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 분 / 대 상 차 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35,000원	1,400원
6.5톤 이상	55,000원	2,500원

2. 보관료

○ 보관료는 1 구획당 500원으로 하며 매 30분마다 500원씩 추가 징수 한다. 단 보관일로부터 1월(30일)까지 부과 징수 한다.

3. 공고비용

○ 당해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

【별지 제1호서식】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제 호	년도		회계	
세입 과목				
납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인	일시			
	장소			
소요 비용	견인료		보관료	
내역		원		원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납부 금액	원			
부과근거: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 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제2조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 부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회계	
세입 과목				
납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인	일시			
	장소			
소요 비용	견인료		보관료	
내역		원		원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납부 금액	원			
부과근거 :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 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제2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세입 과목				
납부 의무자	주소			
	성명			
견인	일시			
	장소			
소요 비용	견인료		보관료	
내역		원		원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납부 금액	원			
부과근거 : 포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 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1. 개정이유

최근 고유가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견인료를 현실화 하여 주차질서 확립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개정 (안 제2조)

- 2.5톤 미만 차량 : 25,000원에서 30,000원(5,000원 인상)
-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 : 30,000원에서 35,000원(5,000원 인상)

입법예고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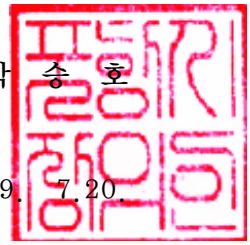

2009. 7.20.

포항시 공고 제2009-830호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다.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

에 대하여 단독주택에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후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라. 자치법규 본문 내용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표기와, 상위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조문 및 명칭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안 제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중 공무수행 시 면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투표확인증 소지자에 한하여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7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50퍼센트 감면

나. 공영주차장(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포함)에 대하여 경차전용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 (안 제9조제4항)

다. 주차요금 징수시간 종료 1시간이전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 요금을 사전에 징수 (안 제10조제3항)

마.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 을 정함 (안 제14조)

○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 노외주차장 규모

-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퍼센트

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안 별표 7)

○ 도시형 생활주택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호실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호실당 1대이상
-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대

-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대

○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

사.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단독주택에 대문 또는 담장 철거 후 내 집 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4조, 제22조, 제23조)

○ 설치비용의 최대 90퍼센트까지 지원하며, 한도액은 200만원

3. 관련법령

가.「주차장법」 제12조의3

나.「주차장법 시행령」

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

라.「주택법 시행령」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8.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전화 270-3635, FAX 270-3620,

E-mail : kdchu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이라 함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이라 함은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이라 함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구역 설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구역은 행정동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2. 성실납세자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 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 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4.「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의 회원

5.「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7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④「공직선거법」제2조, 제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일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중 1회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

⑤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 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차량
5. 기타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장 명칭, 주차제한 차량 등)

③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2항에 따라 준용한다.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공익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일반경쟁	입찰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단단한 재질의 블록과 친환경 소재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 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설치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광지 및 유원지 주변에 한시적 (60일 이내)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주차의 불편과 주위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이나, 블록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으로 한다.

④ 공영주차장(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포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 경차전용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형자동차 이외 차량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0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1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른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 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규칙 제6조의2제1항 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특정용도의 자동차를 말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설치 구간에는 별표 6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차구획된 도로에 전용주차장의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제14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 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

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frac{\text{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times \frac{\text{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을 적용 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본 건물이 멸실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 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시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 등)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규모는 판매시설·운수시설·창고시설 및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로써 제16조에 따른 설치

대상대수의 5퍼센트 상당규모를 말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른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 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부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 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①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제5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 내에서 주차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고시 한다.

제21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4장 보조

제22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법 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23조 (보조대상 및 보조금) 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포항시에 개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확보 의무가 없는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철거 하거나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자
2.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자

② 보조금은 200만원 이하로 하되, 총 공사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 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10일 이내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제5조제1항 관련)

급지구분	1회 주차권	월 정기주차권	
	(1구획당 30분마다)	주간	야간
1급지	500원	75,000원	56,000원
2급지	300원	45,000원	33,000원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을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1:00시
   (나)11월 ~ 3월 09:00 ~ 20:00시
2. 급지구분은 동지역과 읍·면의 도시계획구역 내 지역을 1급지로 하고, 그 외의 지역을 2급지로 한다.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 후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본다.
4. 시장은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7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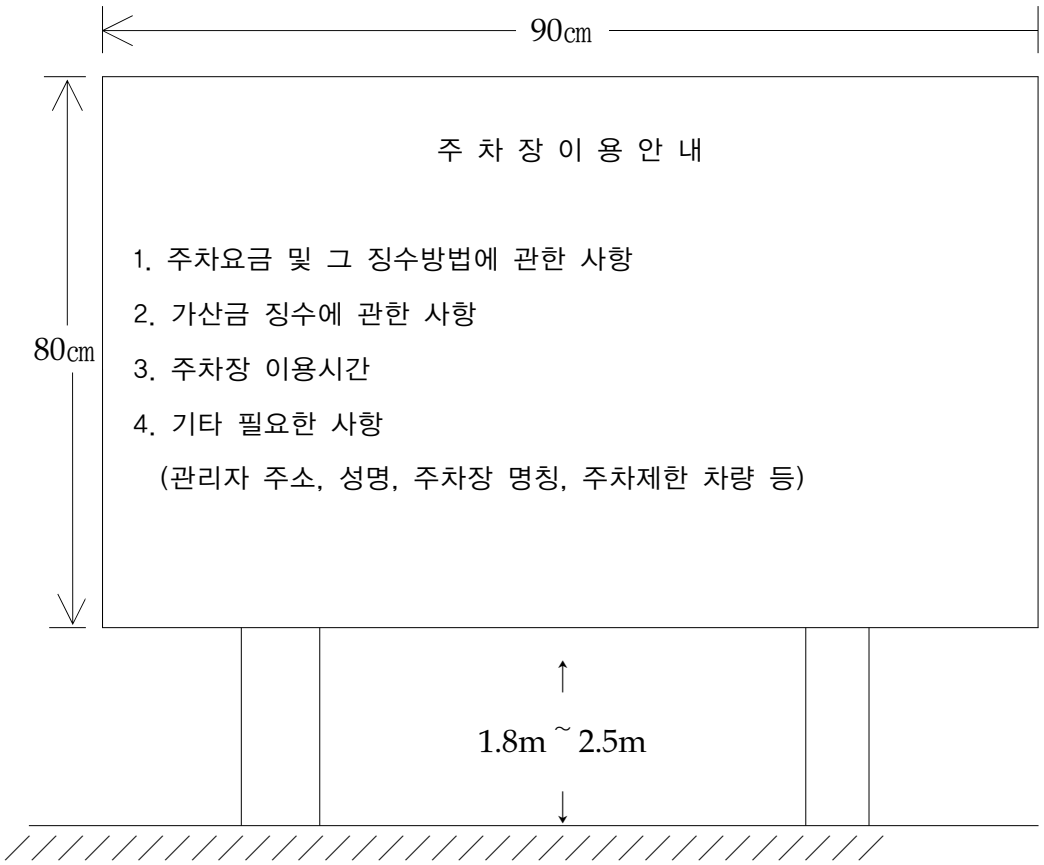

〈비 고〉

구 분	재 료	색 체	
		바 탕	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	알루미늄판	녹 색	흰 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녹 색	흰 색
민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청 색	흰 색

※ 색체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3】

노외 주차장 표지 (제7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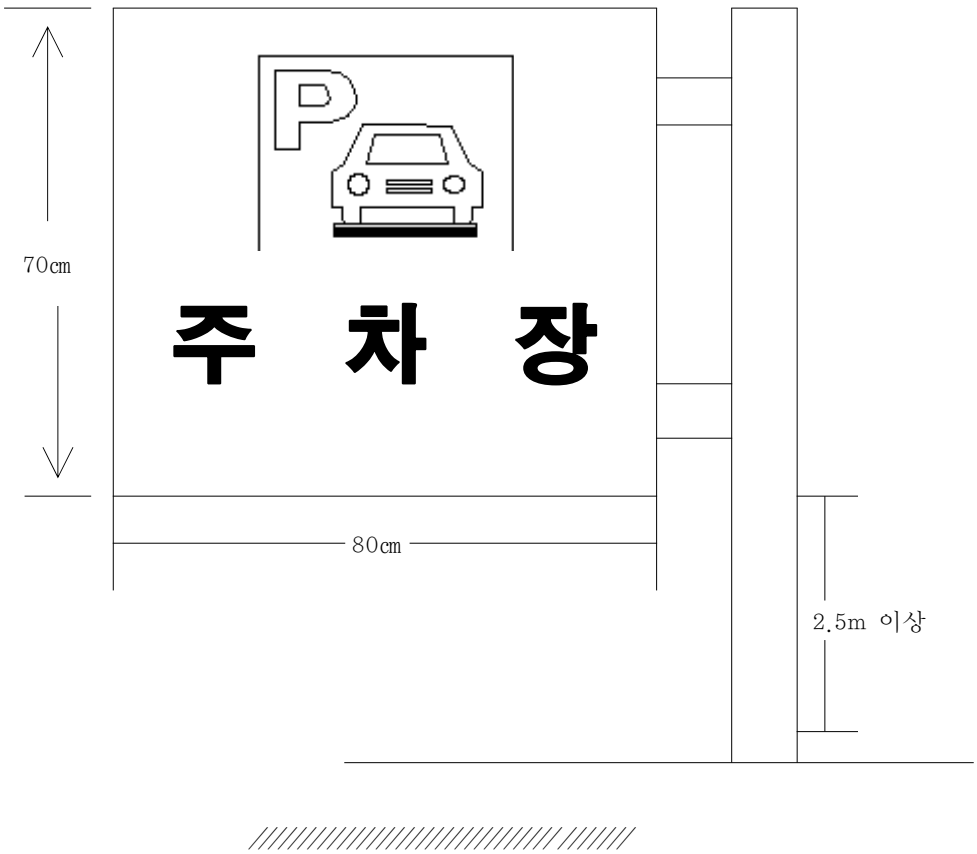

〈비고〉

- 재료 : 알미늄·아크릴 또는 철판
- 색 채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외부표지판(가로80㎝×세로 70㎝)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30㎝×세로 25㎝)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 처리 하여야 한다.

【별표 4】

노외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제7조제4항 관련)

(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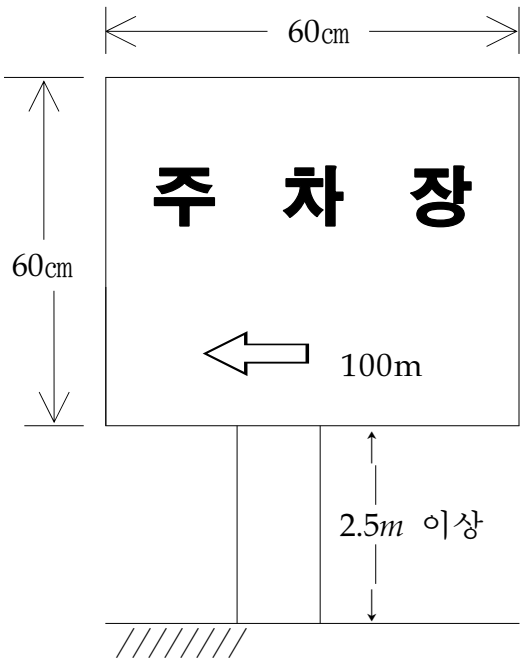

(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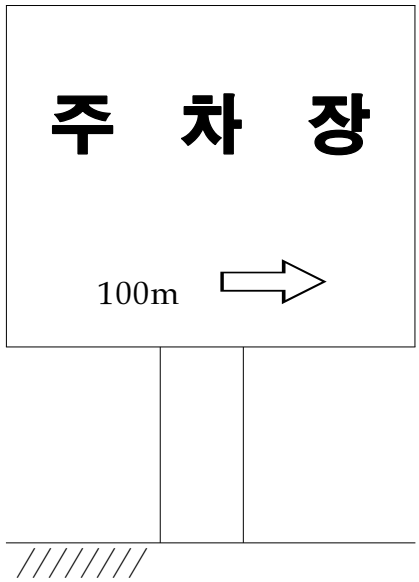

〈비고〉

- 재료 : 알미늄·아크릴 또는 철판
- 색 채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5】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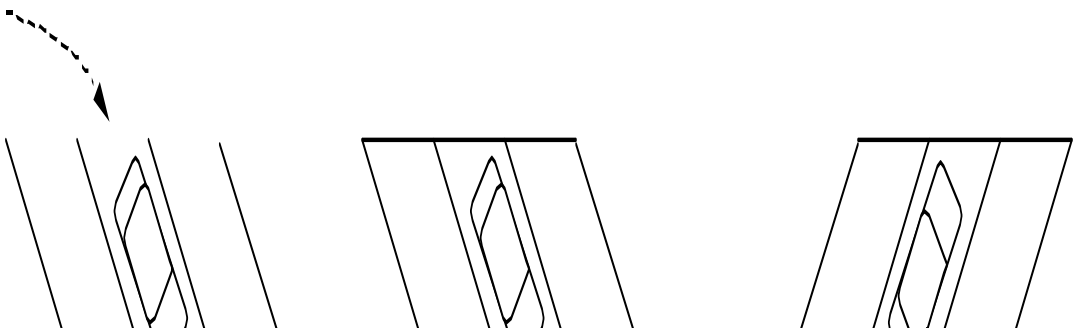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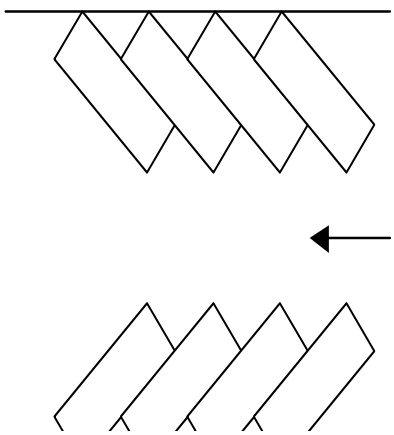

나. 45°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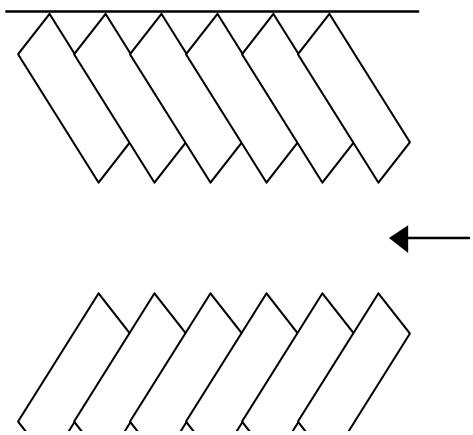

다. 45° 교차주차(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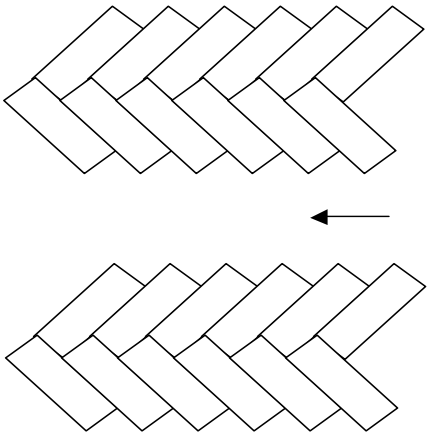

라. 45° 교차주차(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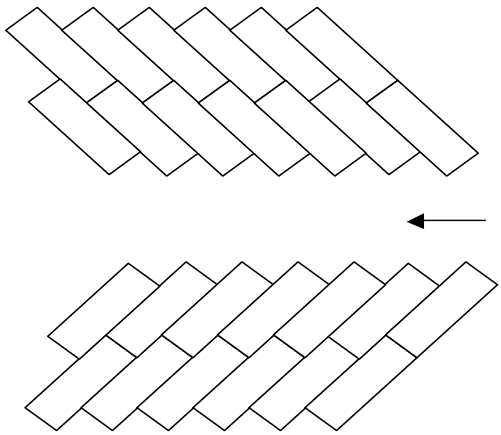

마. 6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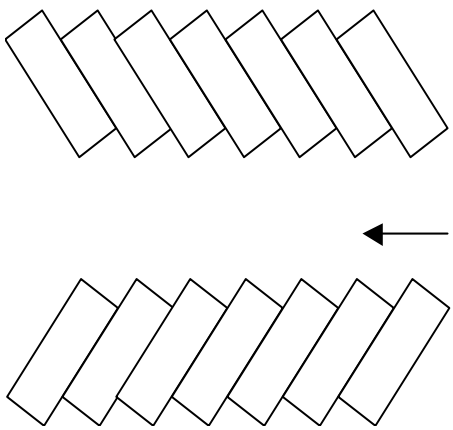

바. 60° 후퇴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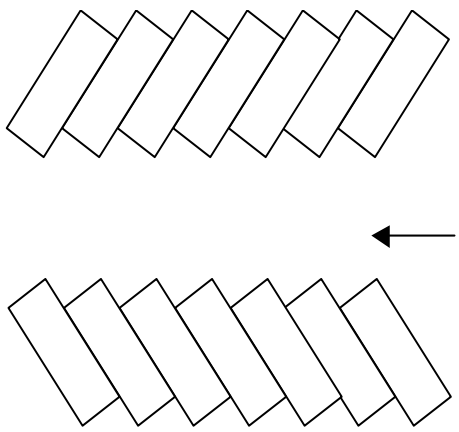

사. 9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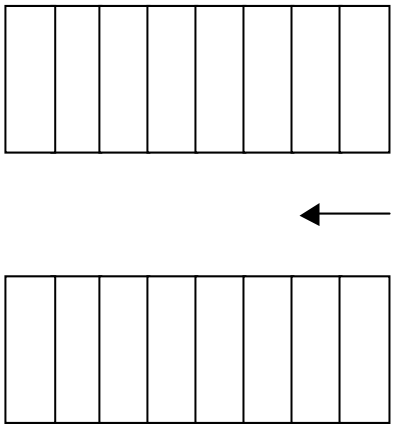

아. 90° 후퇴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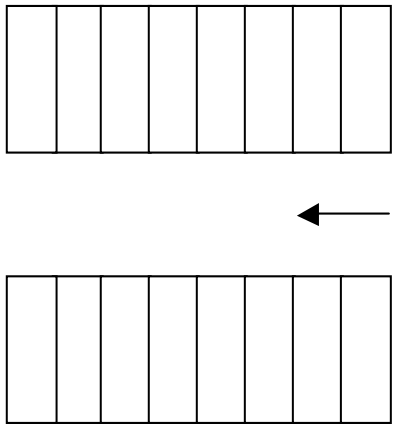

【별표 6】

전용주차장 표지판 (제13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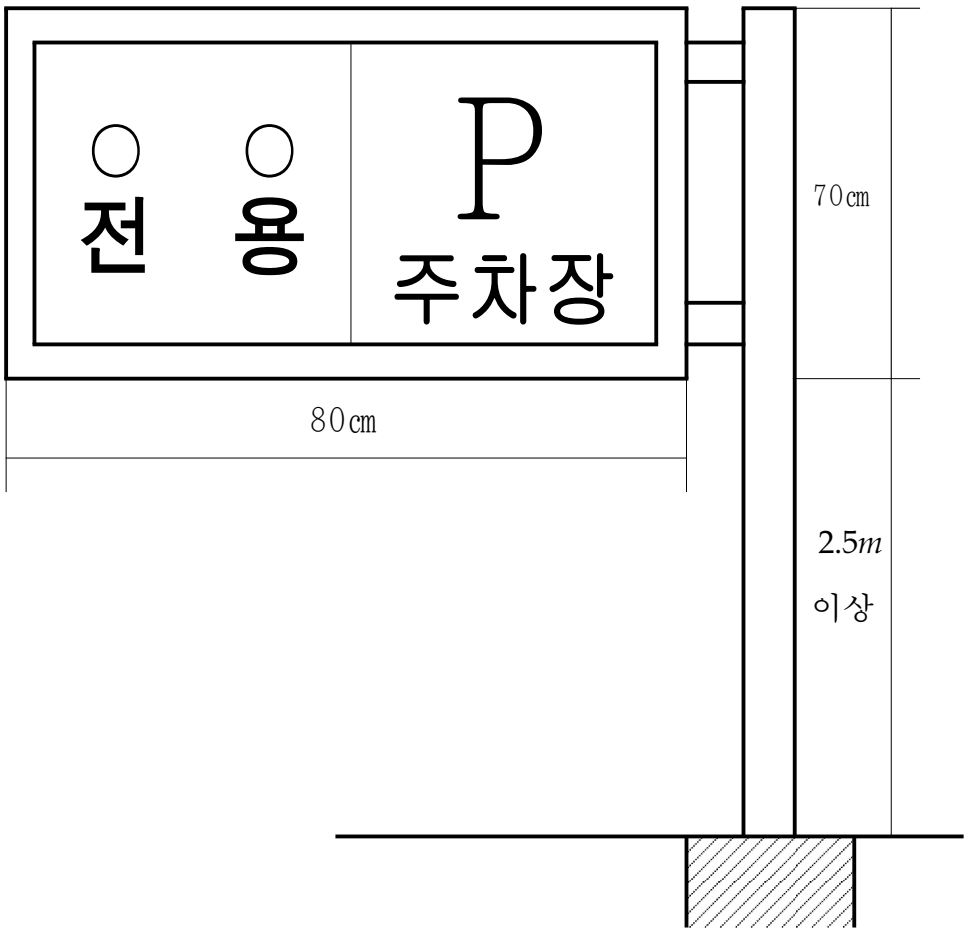

〈비고〉

- 재료 : 알미늄·아크릴 또는 철판
- 색 채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외부표지판(가로80㎝×세로 70㎝)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 처리 하여야 한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오피스텔은 호실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호실당 주차대수 1대,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3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단, 산업단지 내 공장은 시설면적 500㎡당 1대 (시설면적/50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 양수장 · 정수장 · 대피소 · 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 · 수녀원 · 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 전신전화국 ·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 · 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 · 쇼핑센터 · 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 · 전시장 · 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 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제19조제1항)

(앞면)

9cm × 6cm

NO.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시설물 위치 :

사 용 자 :

차 량 번 호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포 항 시 장

〈비고〉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4. 이 주차장 사용증은 지정된 주차장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별표 9】

과징금가감기준(제24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기 본 과징금	위 반 정 도	가감후 과징금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50	위반시	45
			2회 이상 위반시	60
2. 법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50	위반시	45
			2회 이상 위반시	60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법 제24조제1항제3호	50	위반시	45
			2회 이상 위반시	60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법 제24조제1항제4호	50	위반시	45
			2회 이상 위반시	60

〈비고〉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별표 10】

과태료부과기준(제25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위반정도	과 태 료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2호	위반시	30
		2회 이상 위반시	50
2. 법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5호	위반시	30
		2회 이상 위반시	50
3.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	위반시	30
		2회 이상 위반시	50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6호	위반시	30
		2회 이상 위반시	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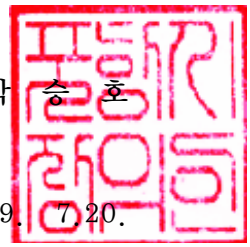

2009. 7.20.

포항시 공고 제2009-831호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 단독주택에 대문 또는 담장 철거 후 내 집 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 지급 및 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설치비용의 최대 90퍼센트까지 지원하며, 한도액은 200만원

3. 관련법령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8.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전화 270-3635, FAX 270-3620, E-mail : kdchu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액)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주차장 설치 신청)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내 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에 의거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설치완료 신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장 관리) 시장은 보조금으로 설치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내 집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반환 및 회수) 시장은 내 집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 하여야 하며, 반납을 거부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주차장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차장을 폐지하였을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조금지급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지 원 금 액 (주차장 1면 기준)
담장 철거 또는 개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500,000원까지
대문 철거 또는 개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700,000원까지
이웃간 경계담당 철거 후 공동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000,000원까지

1.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증가대수 1면당 최고 500,000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2. 주차구획 기준
   가. 직각 주차시설 규격 : 2.5m×5m 이상
   나. 평행 주차시설 규격 : 2.5m×5m 이상
   다. 이웃간 경계담당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 규격 : 2.5m×10m 이상

【별지 제1호서식】

내 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 (제3조 관련)

(앞면)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차량번호</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4">주차장현황</td><td>위 치</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설치유형</td><td colspan="2">① 담장 철거 후 평행주차</td><td colspan="2">② 담장 철거 후 직각주차</td><td>주차대수</td><td>대</td></tr>
<tr><td colspan="2">③ 대문 철거 또는 개조 후 주차시설</td><td colspan="2">④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td><td>규 모</td><td>가로 m
세로 m</td></tr>
<tr><td>공사기간</td><td colspan="2"></td><td colspan="2">완료예정일</td><td colspan="2"></td></tr>
</table>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차시설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 2. 주차시설 예정지 현황사진 1매 3.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각 1통 4. 이웃간의 담당을 철거하여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뒷면)

<table>
<tr><td colspan="2">주 차 장 배 치 도</td></tr>
<tr><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대지 경계선 안에 주차시설 확보 면적 및 공사구간, 주차구획선 표시</td></tr>
<tr><td>① 담장 철거 후 평행주차</td><td>② 담장 철거 후 직각주차</td></tr>
<tr><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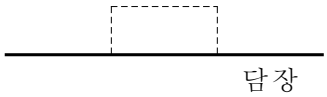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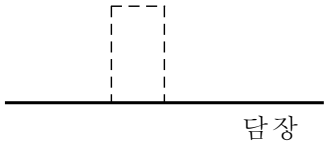
</td></tr>
<tr><td>③ 대문 철거 또는 개조 후 주차시설</td><td>④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td></tr>
<tr><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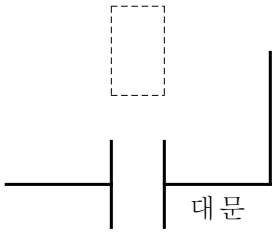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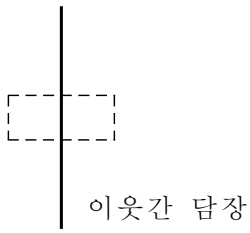
</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내 집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제4조 관련)

설 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차장 현 황	주차장 위치			
	주차장 형태		규 모	㎡ 대
	설치 신청일		설치완료일	
	공사금액		보조금액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중·후 사진 각3매 2. 공사비내역서 또는 정산서 3. 영수증서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4조 관련)

<table>
<tr><td rowspan="6">청구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공사금액</td><td></td><td>자부담</td><td></td><td>보조금액</td><td></td></tr>
<tr><td rowspan="3">지급계좌</td><td colspan="2">은 행 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계좌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예 금 주</td><td colspan="3"></td></tr>
</table>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내 집 주차장 관리카드 (제6조 관련)

(앞면)

설치번호		설 치 일		규 모	대 ㎡
위 치	포항시 구 읍면동 번지				
설 치 자			전화번호		
주차형태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				
설치형태	담장철거( ), 대문개조( ), 이웃간담장철거( ), 기타( )				
공사금액		자부담		보조금액	

조사 및 조치 내용	조 사 일 시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특 기 사 항

(뒷면)

	조 사 일 시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특 기 사 항
조사 및 조치 내용				
주 차 장 전 경 사 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